



중 점 분 석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정책 · 환경 변화 동향과 시사점

고 안 나/국별조사실 조사역

- I. 머리말
- II. 대 러시아 FDI 현황
- III. 외국인투자 정책과 환경 동향
- IV. 전망과 시사점

요 약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의 발전 가능성으로 인해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의 하나로 꼽혀왔으나, 미비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고유가에 힘입은 경제성장세 지속, 정치적 안정, 투자환경 개선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에 대한 FDI 유입액이 점차 증가하였고 FDI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실적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2005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 정책면에서 푸틴 정부는 에너지 개발에 대한 조정과 간섭을 강화하는 등 국가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메드베데프 정부는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메드베데프는 기업 경쟁력 확보와 경제 혁신에는 외국인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산업 다변화를 위해 에너지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투자 환경면에서는 2008년 외국인투자제한법 제정으로 자원개발과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투자 환경은 다소 악화되었으나, 조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감면, 세제 간소화, 국제 수준의 회계 기준 도입 등으로 전반적인 사업 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 러시아 FDI는 발전 산업 민영화로 2008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9년 4분기 이후 세계 경기회복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개도국에 대한 투자경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개선되고 있는 투자환경 등을 고려할 때 대 러시아 FDI는 2010년 이후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현대화는 경제구조를 자원·에너지 중심에서 지식·혁신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ICT, 원자력, 무선·전자, 조선 산업 등이 그 핵심산업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의 확대될 가능성과 실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전세계의 대 러시아 FDI가 주춤해진 현 상황을 오히려 러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 머리말

러시아는 확인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원유의 6.3%(세계 7위), 천연가스의 23.4%(1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원유는 12.4%(세계 2위), 천연가스는 19.6%(세계 1위)에 달하는 에너지자원 부국¹⁾이다. 또한 러시아는 인구 1.4억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발전 가능성이 높아 매력적인 투자처의 하나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불완전한 보호 등 법과 제도의 미비, 통관상의 애로와 부패,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 투자환경의 문제점들이 이와 같은 매력을 반감시켜 왔고, 불안정한 경제적·정치적 환경²⁾도 겹쳐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활발하지 못했다.

1994~2006년간 대 러시아 FDI 규모는 평균적으로 국내 고정자본투자의 8%, GDP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러시아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감안할 때 FDI가 러시아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특히, FDI 유입이 내수 관련성이 높은 에너지, 벤처 분야에 집중되어 러시아의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세계금융위기 발발 이전인 2003~07년 기간 중 러시아는 고유가에 힘입어 평균 7%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푸틴 집권 이후로는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세제 간소화 등 전반적인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FDI 유입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기 이전인 2008년까지 급증하였고, FDI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었다. 다만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FDI 유입이 감소하였다.

러시아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생산요소를 제공³⁾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 투자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0.8%, 금액 기준으로 1.0% 수준(2009년 말 누계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대 러시아 직접투자는

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9에 따른 통계임.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은 현재 러시아 경제의 핵심으로서 산업생산의 약 30%, 수출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음.

2)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 2003년 유코스 사태 등 러시아에서 끊임없이 발생한 경제, 정치적 혼란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기업들에게 러시아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음.

3)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자원과 임산, 수산 자원 같은 천연자원의 공급처가 될 수 있음.



2005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세계경기가 침체된 2009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들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경제 현대화⁴⁾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개최 준비 프로젝트⁵⁾도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하고 있어, 2010년에는 세계경기와 함께 전세계의 대 러시아 FDI 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0년은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 정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도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러시아의 FDI 유입 현황, 외국인투자 정책과 환경 동향을 살펴보고 대 러시아 FDI 전망과 함께 우리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대 러시아 FDI 현황

1. 전세계 대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이전의 수년간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러시아에서 고유가에 힘입은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2008년에는 발전산업이 민영화되는 등 외국인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03년 FDI는 80억 달러, 2004~05년에는 평균 1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FDI 유입액은 2006년에 297억 달러로 전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고, 2007년에도 5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6%나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FDI 유입규모가 사상 최대인 737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발전 산업이 시장에 개방된 데다 FD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천연자원 분야는

4) 에너지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경쟁력 있는 첨단 경제를 구축, 산업구조를 다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임.

5) 러시아는 소치올림픽 준비를 위하여 120억 달러 규모의 200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40%는 민간과 해외부문의 투자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힘.



물론 자동차⁶⁾·부동산 산업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이었다. 발전 산업의 민영화는 최근 러시아에서 시행된 경제개혁 조치 중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며, 다수의 외국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UNCTAD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러시아의 FDI 유입누계액은 2,140억 달러로 GDP의 12% 수준⁷⁾이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세계금융시장의 경색과 이로 인한 주요 투자국의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2009년의 FDI 유입액은 38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09년 1~9월 중 FDI 유입 실적을 전년동기 대비 44% 감소한 310억 달러로 발표하였다.

〈표 1〉 대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2009(1~9월)
은행 부문	2,510	7,221	10,075	4,949
비은행 부문	27,191	47,853	63,614	26,134
합 계	29,701	55,074	73,689	31,082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투자국 및 투자지역은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투자국으로는 2008년 기준으로 사이프러스, 버뮤다, 네덜란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독일이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이프러스,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조세피난처(tax haven)⁸⁾로서 이들의 대 러시아 투자를 실질적인 FDI로 보기 어렵고, 네덜란드에서 유입되는 FDI도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Gazprom)⁹⁾의 네덜란드 금융 자회사가 러시아 에너지

6) 프랑스의 Renault가 러시아의 자동차제조회사인 AvtoVaz에 10억 달러를 투자한 사례를 들 수 있는데, 2005년부터 협의가 진행 되어 2008년 2월에 매각이 마무리되었음.

7) 선진국의 경우 동 비율은 약 25%

8) 세계상의 우대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됨.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유입되는 FDI는 대부분이 러시아의 역외 기업이 송금하는 자본(repatriated flight capital)으로 분석됨.

9) 가즈프롬(Gazprom)은 1989년 구소련의 가스산업부가 국영기업화 되면서 생성된 러시아의 가장 큰 천연 가스 추출 기업으로 부분적으로는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정부의 지분이 지배적임. 2008년 기준으로 가즈프롬은 전세계 가스생산의 17%를 차지하는 5,497억m³ 규모의 천연가스, 3,200만 톤의 석유와 1,090만 톤의 가스 콘센데이트를 생산함. 가즈프롬의 경제규모는 러시아 GDP의 10%에 해당함.



부문에 투자하는 것으로, 실질적 최대 투자국은 독일인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지역으로는 모스크바와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2%를 차지하였고, 상트페테르부르크(9%), 사할린(8%), 칼루가(3.5%) 등의 순이었다. 이는 모스크바에 대부분 공영기업의 본부가 있고, 사할린은 풍부한 석유·가스 매장지이며, 칼루가 지역은 모스크바 변두리의 산업지대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투자업종은 천연자원 관련 산업에 편중되어 2004~07년 중 이 부문 FDI가 총 유입액의 40%인 264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는 규모가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업종도 제조업과 도소매업 중심에서 건설, 금융 및 부동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 대 러시아 투자실적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선정한 우리나라 주요 투자대상국 24개국¹⁰⁾ 중 5위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중국, 베트남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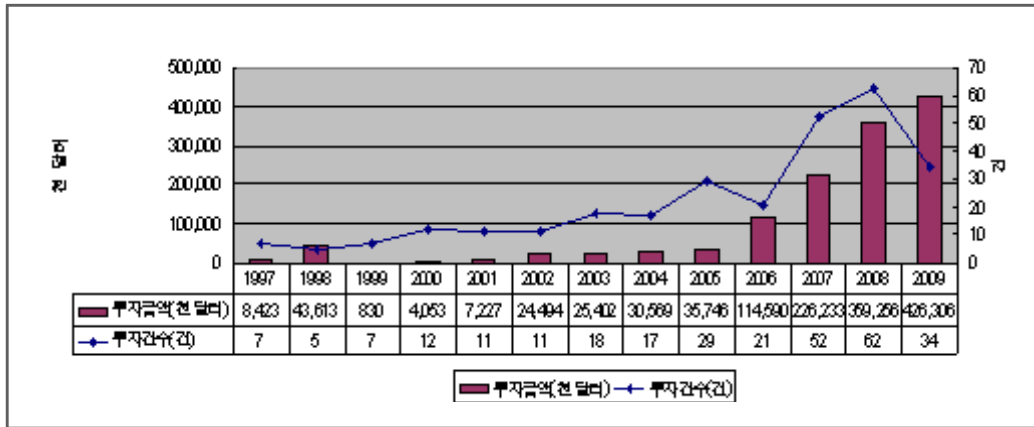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지 않았던 대 러시아 투자는 2006년에 연중 투자금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서며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3억 5,926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6년에는 전년에 비해 투자 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투자금액이 3배 가까이 증가하여 대규모 투자 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행되어 투자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한 4억 2,631만 달러로 최고실적을 기록¹¹⁾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FDI 누계액은 2009년 말 기준 총 379건, 14.4억 달러이다.

10) 2008년 말 누계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국가 중 고소득국 및 국가신용도 최상위 국가(OECD 1등급 기준)를 제외한 개도국 중심으로 선정(아시아 11개국, 중동·아프리카 2개국, 유럽·CIS 6개국, 중남미 5개국). 자세한 내용은 반형섭, "2009년도 하반기 투자환경위험 평가현황", 수은해외경제, 2009. 10 참조

11) 투자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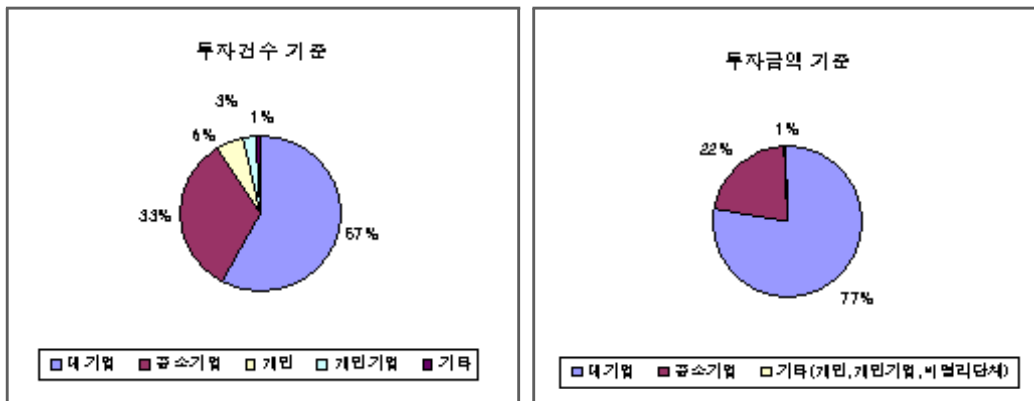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대 러시아 투자기업을 규모별로 보면(누계기준), 건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57%, 대기업이 34%를 차지하였다. 이는 도·소매업 등 서비스 분야와 소규모 자동차 부품, 가정용품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였기 때문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대기업이 77%, 중소기업이 22%를 각각 차지하였다.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하면 투자자규모별 투자건수 비중은 중소기업, 대기업, 개인, 개인기업 순이며, 투자금액 비중은 대기업,

〈그림 2〉 기업규모별 대 러시아 투자 비중



주: 개인과 개인기업의 구별기준은 법인등록 여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 개인, 개인기업 순이다. 누계액 기준으로 러시아의 건당 평균투자금액¹²⁾은 378만 달러이며,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879만 달러, 중소기업은 145만 달러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진출해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가 대부분이다. 2007~09년 중 제조업 부문의 세부 투자분야를 보면, 대기업은 식료품(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등), 텔레비전, 자동차 제조업에, 중소기업은 자동차·전자부품 시장 등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도·소매업 분야의 세부 투자분야에서는 대기업이 백화점 등 대형 종합 소매업, 중소기업은 의류 관련 도·소매업에 주로 투자하였고, 자동차 완제품 및 부품 시장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진출해 있다.

〈표 2〉 업종별 대 러시아 투자 현황
(2009년 말 투자누계액 기준)

단위: 건, 천 달러

투자 업종	건 수	금 액
제 조 업	127	807,829
도 매 및 소 매 업	76	214,385
농 업, 임 업 및 어 업	47	M72,005
건 설 업	28	30,074
부 동 산 업 및 임 대 업	22	62,42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9	M1,644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4	37,880
운 수 업	12	13,127
숙 박 및 음 식 점 업	8	51,744
전 문, 과 학 및 기 술 서 비 스 업	7	4,703
기 타 ^{주)}	18	143,435
합 계	379	1,441,304

주: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2) 누계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건당 평균투자규모는 300만 달러로 대기업은 1,972만 달러, 중소기업은 157만 달러 수준임.



Ⅲ. 외국인투자 정책과 환경 동향

1. 외국인투자 정책

가. 옐친 정부의 민영화 추진(1991~99년)

보리스 옐친 정부는 경제체제 전환정책의 하나로 민영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구소련 말기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전체 산업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조건일 뿐 아니라,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기도 했다. 또한 모든 국영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관료들이 체제전환을 위한 개혁에 정치적 저항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속하고 대대적인 민영화 정책이 필요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민영화가 예고되자마자 대상 기업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사회 각 계층의 치열한 이해대립이 표출되어 러시아의 민영화 정책은 실행 초기부터 난관을 겪었다. 1993년 초에 옐친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민영화증서(voucher)를 전격 배포하고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국영기업 민영화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국영기업 민영화는 빠르게 진전되어 1994년 말까지 기존 국영기업의 절반 이상이 민간 소유로 이전되었다.

1995~96년에는 ‘주식담보대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자재 및 에너지 기업들이 민영화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민영화 과정은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국부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소수의 재벌이 우량 국영기업¹³⁾을 헐값으로 인수하면서 올리가르히(Oligarch)¹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13) 루코일(Lukoil), 시브네프트(Sibneft), 유코스(Yukos), 노릴스키 니켈(Norilsky Nickel) 등

14) ‘올리가르히’는 고대 그리스의 과두정치(소수자에 의한 정치 지배)를 뜻하는 ‘올리가키(Oligarch)’의 러시아어임. 러시아의 주요 국영산업 민영화 과정에서 정경유착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공공사업분야, 언론, 석유, 제조업 등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세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됨.



나. 푸틴 정부의 전략적 산업 보호(2000~08년)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옐친 정부가 1990년대의 경제혼란기에 에너지자원 개발권을 민간기업과 외국 자본에게 무분별하게 배분하였다고 비판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조정과 관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03년 10월 15일에 발생하여 국내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유코스(Yukos)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푸틴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천연가스 수출권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에게 새로 부여하여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가스개발 사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007년에 정부는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소유지분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고, 2008년에는 외국인투자제한법을 통해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계획임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석유·가스 부문 기업은 점차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BP와 로얄 더치 셸(Royal Dutch Shell)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의 각종 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로얄 더치 셸은 러시아 환경당국의 압력에 밀려 사할린 2 프로젝트¹⁵⁾의 보유지분 중 일부를 가즈프롬에 매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가자본주의적 경향은 집권 초기부터 규율과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을 주창한 푸틴의 성향과도 일치한다.

푸틴은 외국인투자를 통한 민영화에는 소극적이었는데, 그 예로 국영기업들의 효율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천연가스, 철도 등의 분야의 국영 독점기업들은 그 자체가 계획 경제 시절의 유산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경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옐친 정부가 추진하지 못했던 이들 기업들의 효율화는 푸틴 정권의 최대 과제로 간주되었으나, 집권 1기(2000~04년) 동안 푸틴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러시아 최대의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의 경우, 푸틴이 집권한 지 1년 후인 2001년에 최고경영자가 교체되어 이 회사의 구조개편을 통한 효율화가 시작되리라는 기대가 지배적이었으나, 푸틴 집권기가 지난 이후인 2008년 11월 기준으로 가즈프롬의 정부 지분 비율은 51%로 여전히 정부가 지배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15) 러시아 액화 천연가스의 최대규모 개발 사업임.



〈유코스 사태〉

푸틴 정부가 당시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인 유코스의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Mikhail Khodorkovsky) 회장을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하여 생긴 사건을 일컫는다. 유코스는 1993년 여러 국영회사들이 통합해 설립한 국영기업이었으나, 1995년 12월 최대주주인 메나테프(Menatep)은행에 매각되면서 민영화되었다. 2003년에는 국내 최대의 석유회사로 성장하였고, 러시아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서방 투자자들에게 러시아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푸틴 정부는 2003년에 호도르코프스키 회장을 구속한 데 이어, 2004년 4월에는 34억 달러에 달하는 채납세금의 강제추징 영장을 발부하였고 추가 세무조사에서 유코스의 납세부담액은 매출액보다 많은 240억 달러로 늘어났다. 정부는 2004년 11월에 유코스의 핵심 자회사인 유간스크네프테가즈(Yuganskneftegaz)를 89억 달러라는 헐값에 강제로 매각하였고, 2006년 7월에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Rosneft)가 유코스 자산을 260억 달러에 단독 매입하였다. 2004년 국제 고유가 현상으로 석유산업의 수익이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하였던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외국인투자자가 러시아 투자를 감소 또는 회수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유코스 사태 이전 호도르코프스키 회장은 공산당 등 야당의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푸틴 이후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임을 공공연히 밝혀 크렘린 실세들의 눈총을 받아왔다. 결국 유코스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회장 등 경영진의 탈세문제가 부각되었으나, 실제로는 올리가르히에 대한 푸틴의 보복이라는 지극히 정치적 성격을 띤 것으로, 현대 러시아에서 형성된 정치와 올리가르히의 복잡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푸틴 집권기에는 외국인투자에 정책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제공되지는 않았으나, 2007년에 에너지 부문의 개혁이 시행되고, 고유가에 힘입어 러시아가 급격한 경제성장세를 보이면서 외국인투자 유인이 증가하였다. 2007년의 최대 민영화 사례는 3분기에 러시아 메첼(Mechel) 그룹이 국영 석탄기업인 야쿠투골(Yakutugol)을 23.4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탄화수소, 금속, 전기 부문에서 계약들이 뒤따랐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에너지 부문 개혁은 2007~08년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국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진행되었다. 발전부문 민영화의 사례로는 독일의 이온(E.ON)이 지역



발전소 제5호(Territorial Generation Company No. 5)를 84억 달러에, 이탈리아의 에넬(Enel)이 지역발전소 제3호(Territorial Generation Company No. 3)를 63억 달러에 인수한 것 등이 있다.

발전부문의 외국인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한동안 민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2008년 7월에 푸틴이 연방독점금지청에 메첼 그룹의 판매기록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른 바 메첼 사건¹⁶⁾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푸틴 전 대통령이 2007년에 민영화하였던 국영기업 야쿠투골을 다시 국유화하고자 지분 매각을 메첼에 제안하였으나, 메첼이 이를 거부한데 따른 정치적 보복조치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후 메첼은 주식가격이 종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하는 등 큰 경제적 손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일관성 없는 기업 정책을 나타내는 일례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코스 사태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 메드베데프 정부의 경제 현대화(2008년 이후)

푸틴 대통령이 국가자본주의적 정책을 추구하였던 반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현 대통령은 정부와 경제의 분리를 추구하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지도자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의 가장 귀중한 자산을 최종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두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현대화 없이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경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2009년 11월 13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영기업을 비판하고 러시아 경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2009년 12월 24일 3개 국영 TV 공동 주관 토론회를 통해 러시아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 과제임을 재차 주장하였다. 그는 2009년 러시아 지도부의 3가지 실패는 ①자원의존형 경제구조를 바꾸지 못했고, ②기업 경쟁력 확보와 경제 혁신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였고, ③실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자평하였다. 아울러 국가의 중점산업으로서 구소련 시절의 에너지와 중공업이 아니라 첨단 정보기술과 통신, 원자력, 우주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11월 27일에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산업 다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러시아 각료회의가 11월 26일에 승인한

16) 러시아 연방독점금지청은 메첼이 일부 석탄 구매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하였고 공급계약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불공정한 공급가격을 설정·유지하였다고 주장함.



‘2030 에너지 전략’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가스·석유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크게 줄일 계획이며, 외국 기업의 각종 투자장벽을 제거해 에너지 산업의 FDI 규모를 5%까지 늘릴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투자 촉진과 재정 적자¹⁷⁾ 보전을 위해서 국유 자산의 민영화 규모를 당초보다 확대할 전망이다.¹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향후 2년 간 국영 기업의 자산을 좀 더 많이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금융위기로 국가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국영기업들이 투자 효율성이 낮아져 오히려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고 보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선기업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방산기업 로스테크놀로지(Rostekhnologii), 나노기업인 로스나노(Rosnano), 대외무역개발은행(VEB), 통신기업 스바진베스트(Svyazinvest), 송유관기업 트란스네프트(Transneft), 국적 항공사 아에로플로트(Aeroflot), 국영 TV 채널1 등 10개 내외의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을 올해 안에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민간 투자를 방해하는 부패 관리들에 대한 처벌의 강화, 통관 절차의 간소화, 외국 첨단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의 간소화 방안 등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이번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원의존형 경제 구조의 한계를 절감한 러시아가 경제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분석된다.

2. 외국인투자 환경

가.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법(1999)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던 1991년 7월 4일에 최초로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된 후 1999년 7월 ‘러시아연방 외국인

17) 러시아 정부의 2009년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8%(잠정치)에 이르고 올해는 5~6%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8) 2010년 2월 12일 모스크바 타임스 보도 내용



투자법¹⁹⁾이란 명칭으로 전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러시아연방 내 직접투자를 계획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데, 러시아 법률에 따라 별도 규제를 받지 않는 한 외국 기업도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 투자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²⁰⁾되었으나, 2003년 유코스 사태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사법체계는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2) 외국인투자제한법(2008)

국방,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러시아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절차법’(이하 ‘외국인투자제한법’)이 2008년 4월 29일 하원의 승인 및 동년 5월 5일 대통령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은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 보장, 수용 및 법령 개폐로 인한 손해 보상, 우선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재량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새로 발효된 외국인투자제한법은 이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제한법’도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전략적 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회사 지분을 이미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들은 그 소유지분을 러시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제한법’이 발효된 이후 전략적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때에는 6개월 이내에 러시아 정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가 요구되는 전략산업분야는 특수기술, 무기, 항공, 우주, 원자력, 천연 자원 등 6개 산업부문의 42개 전략산업으로서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50%(외국 국영기업이 투자할 경우 25%)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방송 및 출판 산업의 경우에는 수신지역이나 출판량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만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고, 전력, 목재가공, 석유화학, 가스화학, 중화학, 자동차, 조선 등은 이러한 제한이

19) Federal Law No. 160-FZ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July 9, 1999.

20) 현실적으로 1999년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은 전략적 산업에 대한 혼란스러운 입법으로 인해 일관성이 부족함.



적용되는 전략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하다.

천연자원 중 광물자원의 경우에는 원유(7천만 톤 이상), 가스(50bcm이상), 금(50만 톤 이상), 구리(50만 톤 이상), 백금, 니켈, 우라늄, 다이아몬드 등 대륙붕, 내해의 모든 광물 자원에 대해 외국인 지분이 제한된다.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의 상한은 외국 민간투자자의 경우 10%, 외국 국영투자자의 경우 5%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개발기업인 가즈프롬²¹⁾이나 로스네프트에 대한 외국 민간투자자의 지분 제한은 없다.

이 법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6일에 총리실 직속으로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한 심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행령(러시아연방 시행령 N510)이 발효되었다. ‘외국인투자제한법’에 정해진 상한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심사위원회의 주된 검토 대상은 해당 기업이 자국 또는 타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이다.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외국인투자제한법’은 에너지 및 천연자원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부정적 효과가 있으나,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부문을 명시하고 사업 검토 과정이 초기 신청 이후 3개월 내에 마무리되도록 규정한 점 등 투자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정부 내의 시장친화적 인사(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 들은 이 법의 제한 대상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법이 러시아의 전반적인 투자절차와 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전략적 산업의 규제 강화라는 부정적 효과²²⁾와 투자절차 효율화의 긍정적 효과를 비교 평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 쉽지 않다.

나. 주요 분야별 투자환경

1) 외 환

2004년, 2006년의 외환자유화 조치로 이익 송금, 대출금 상환, 무역 관련 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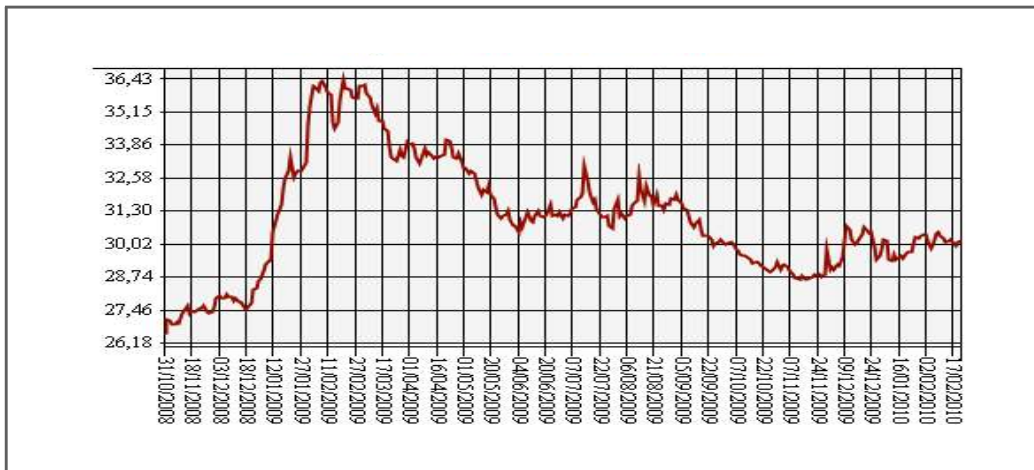
21) 가즈프롬의 외국인 소유 지분은 20% 이내로 제한되어 왔으나, 2006년 초 가즈프롬 지분의 시장자유화가 실시되어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 급증함.

22) 외국인투자제한법은 2005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투자제한을 받는 전략적 분야의 수가 당초 16개에서 최종 42개로 늘어난 점에 비추어 추후 그 수가 다시금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예외로 인정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제한이 폐지 또는 완화되면서 외환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며, 대규모 자본유출, 해외차입 불능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러시아는 금융시장의 외환부족으로 2008년 7월 이후 대미환율이 30% 이상 급격히 상승하는 등 급격한 환율변동을 겪었으나, 이러한 현상은 2009년 이후 유가 상승 및 자본 유입으로 완화되었다. 기준금리 인하 등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루블화 절상 폭은 제한적이었다.

〈그림 3〉 루블화 환율(RUB/USD) 추이 (2008. 10~2010. 2)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2) 조 세

1998년 러시아 정부는 조세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각종 개별 법률을 통합한 통합세법의 입법 작업을 완료하였다. 1999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합세법 제1부는 과세원칙의 정의, 행정 및 일반과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총괄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부터 발효된 통합세법 제2부에는 개별 세금의 산정 및 납세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통합사회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통합세법 제2부는 연방세 19종류, 지역세 5종류, 지방세 22종류 등 무려 46종류로 구성되어 있어 과세대상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다가 2004년 7월에 총 14종류의



〈표 3〉 주요 세금

구 분	포함 내역
연방세(Federal taxes)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²³⁾ , 개인소득세, 통합사회보장세 ²⁴⁾ , 광물채굴세, 수자원세, 천연자원이용세
지역세(Regional taxes)	법인 재산세, 도박세, 교통세
지방세(Local taxes)	토지세, 자연인에 대한 재산세

자료: PwC, Doing Business in Russia 2009.

조세로 간소화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른 러시아의 조세부담은 동유럽 국가 등 여타 체제전환국들과 비해서도 과중한 편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세율은 낮은 편이나, 통합사회보장세, 각종 등록비, 검사비,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로 인한 비용 등 비공식적 준조세 부담은 높은 편이다. 법인세는 20%의 기본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연방정부 과세분 2.5%와(2009년 1월 1일부로 연방정부로 귀속되는 법인세율이 6.5%에서 2.5%로 인하됨), 지방자치단체 과세분 17.5%로 구성된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세율이 18%, 개인소득세는 최대 13%로 러시아는 세계에서 소득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과 러시아간에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3) 금융

러시아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취약하여 기업의 실질적 최대 투자재원은 내부유보금이다. 은행산업은 소수 국영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위 5개 은행이 전체 자산의 44%를 점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모기업으로부터 차입금이 주된 자금원이며, 은행거래 시에도 주로 외국계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 미축적, 회계 불투명 등으로 단기대출,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이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여 여신을 축소하자 정부가 5,000억 루블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이후 은행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3) 주로 주류, 담배, 석유, 천연가스 등에 부과

24) 피고용자 월평균 급여의 26%가 부과되며 전액 고용주가 부담



4) 노 동

러시아는 교육수준이 높아 근로자의 노동의 질은 대체로 높은 편이나, 대도시에서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반면 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인력수급 문제가 존재한다. 고용 여건은 고용주의 권리 확대 등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개정되어 왔으나, 고용·해고 절차, 까다로운 임시직 채용·근로조건 등에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근로자 위주의 조향이 상당수 있다.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 낮은 애사심, 부족한 책임의식 등으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임금 인상 추세, 잦은 이직 등으로 전문직 및 기술직 부문에서는 구인난이 존재한다.

5) 무 역

1989년 이래로 정부는 무역관련 제도·법규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며, 관세율은 점차 하락하여 수입관세는 평균 5~30% 수준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무역 관련 규제는 WTO 가입 이후에 대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러시아 정부의 WTO 가입 의지는 미온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는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2009년 1월 수입차(차종별 5~20% 인상) 및 철강제품(10% 인상) 수입관세의 한시적(9개월+추가 9개월) 인상, 육류 수입쿼터 축소 및 쿼터 초과부분 관세 인상, LCD TV 수입관세 5% 포인트 인상(10% → 15%, 2009.5.1) 등이 시행되었다. 보다 큰 문제는 비공식적인 무역장벽으로, 복잡한 통관절차, 행정편의주의 및 세관원 부패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제도개선 보다 세관원의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다. 평 가

1) 기업경영여건

러시아의 2009년 기업경영여건은 개선되었지만, 종합순위는 2008년의 118/181위에서 120/183위로 종전과 비슷한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IFC 발표자료에 따르면, 183개국에 대한 부문별 기업경영여건의 절대적인 평가순위가 전체적으로 전년 보다 대부분 하락하였다.



〈표 4〉 러시아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주)} 추이비교

	2008		2009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사업등록(기업등록절차)	88	48.6	106	57.9
사업허가(상품보관창고 건축)	120	66.3	182	99.5
노동자고용(채용해고)	104	57.5	109	59.6
재산등록(재산양도 규제)	49	27.1	45	24.6
신용획득(법적권리·신용정보)	109	60.2	87	47.5
투자자보호(기업 거버넌스)	88	48.6	93	50.8
조세납부(조세부과대상·환급)	108	59.7	103	56.3
대외무역(수출입)	160	88.4	162	88.5
계약실행(법정 효율성)	19	10.5	19	10.4
사업폐쇄(파산)	92	50.8	92	50.3
종합평가	118	65.2	120	65.6

주: 평가대상국이 매년 조정되어 2008년 181개국, 2009년 183개국임.
 자료: World Bank (IFC), Doing Business 각호.

또한, 러시아의 종합순위는 브라질, 인도,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사업허가 부문은 183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82위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기업경영여건을 평가순위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종전과 비교하면, 재산등록, 신용획득, 조세납부 분야는 개선되었지만 사업등록, 사업허가, 노동자고용 등의 분야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글로벌경쟁력지수

러시아는 2009년 글로벌경쟁력지수 평가에서 평가대상국(133개국) 가운데 51위(종합 평점 4.2)를 차지하며 중상위 국가로 평가되었다.



2008~09년 종합평점과 평가순위를 비교해 보면, 종합평점은 4.3점에서 4.2로, 평가 순위는 2008년 48/134위에서 2009년 51/133위로 다소 하락하였다. 2009년 평가결과를 2008년과 비교하면, 제도(정책·시스템),인프라스트럭처, 거시경제안정성, 보건·교육, 상품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발전수준, 기술수준, 시장규모, 혁신 부문은 악화되었으나, 인력관리(연수), 기업 발전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서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열악한 기술 수준 및 인프라스트럭처가 외국인 투자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반면, 기업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재정 수지 적자 확대, 정부채무 증가 등으로 러시아의 거시경제안정성이 종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러시아 글로벌경쟁력지수 평가순위 추이비교

		2008		2009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기 초 여 건	제도(정책·시스템)	51	38.1	63	47.4
	인프라스트럭처	110	82.1	114	85.7
	거시경제안정성	59	44.0	71	53.4
	보 건 · 교 육	29	21.6	36	27.1
효율성 향 상	인력관리(연수)	59	44.0	51	38.3
	상품시장효율성	46	34.3	51	38.3
	노동시장효율성	99	73.9	108	81.2
	금융시장발전수준	27	20.1	43	32.3
	기 술 수 준	112	83.6	119	89.5
	시 장 규 모	67	50.0	74	55.6
혁 신	기 업 발 전 수 준	8	6.0	7	5.3
	혁 신	91	67.9	95	71.4
총 합 평 가		48	35.8	51	38.3

자료: WEF, CGI.



IV. 전망과 시사점

1. 대 러시아 FDI 전망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 러시아 FDI 유입액은 2008년 729억 달러에서 2009년 38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전세계 FDI에서 대 러시아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8%에서 2009년 5.1%로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 러시아 FDI가 2009년에 감소한 절대적 이유가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가 회복된다면 FDI 유입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또한 천연자원 부문에 편중되던 FDI가 최근 자동차 산업, 식품업, 금융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유입되고 있는 현상도 향후 FDI 유입 확대 가능성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전세계 경기침체가 각국의 FDI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중국 등에서는 FDI를 유치하기 위해 경기부양조치²⁵⁾를 시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2000년 초반 하더라도 연방차원의 FDI 정책이 없었으나, FDI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경기침체에 따른 FDI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 자동차 포함 제조업 등의 부문에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공식적 지지 입장을 표시하고,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는 등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FDI 유입 증가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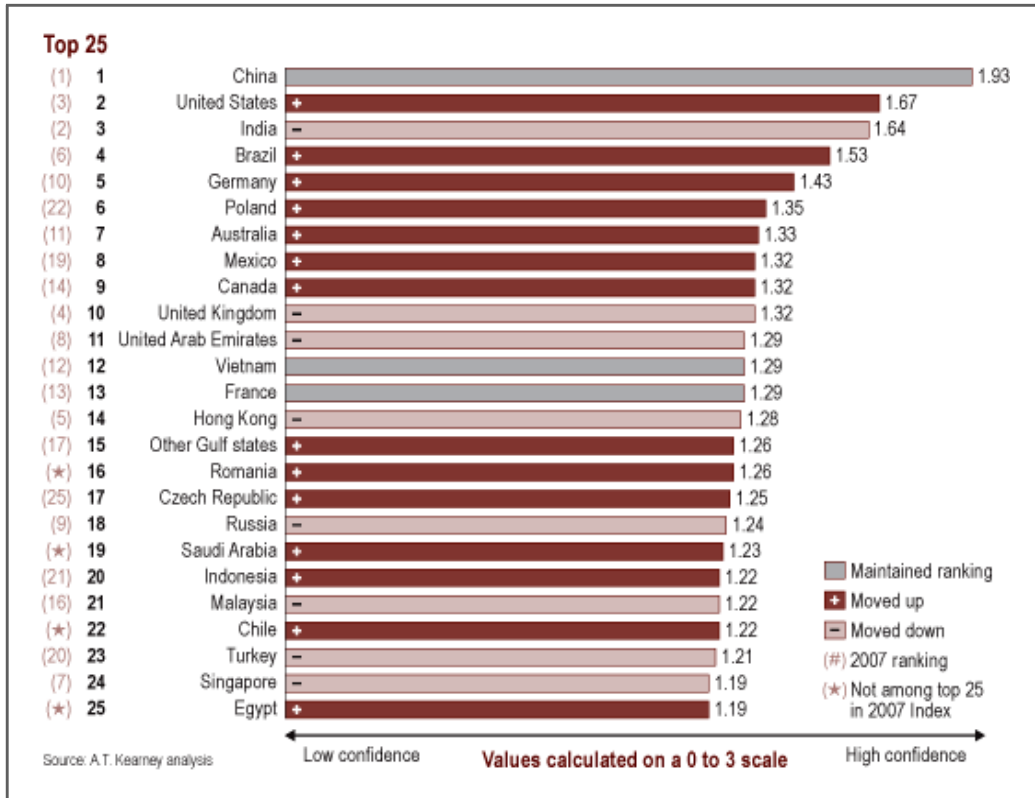
러시아가 2009년 4분기 이후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상도 FDI 전망을 밝게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은행, 건설,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러시아 경제는 2009년 1분기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를 기반으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고, 금융시장 리스크도 감소하고 있어 경제회복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11월 이후 GDP 성장률 및 산업생산성장률 등 지표상 경제도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현 수준(배럴당 70달러대)을 유지하고, 미국 및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러시아 경제도

25) 2008년 11월 5,860억 달러 규모로 경기부양조치를 시행함.



〈그림 4〉 2010 FDI 신뢰지수



자료: A.T. Kearney.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연 3~5%대²⁶⁾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러시아를 다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전략적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가 강화되어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러시아의 천연자원 및 역동적인 대규모 내수시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A.T. Kearney의 FDI 신뢰지수²⁷⁾에서 러시아는 2009년보다 9계단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2010년 기준으로 여전히 세계에서 18위를 차지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분류되고 있다.

26) 러시아 경제개발부 3.1%(2009.12월), IMF 3.6%(2010.1월), World Bank 3.2%(2009.11월), OECD 4.9%(2009.11월), EBRD 3.5~4%(2010.1월), Uralsib Bank 5.5%(2010.1월)

27) A.T. Kearney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FDI 신뢰지수는 국제투자의 현황 및 전망을 제공함. 동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회사의 총 연간국제수입은 2조 달러 이상을 차지함.



2. 시사점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경제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러시아에서는 정책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투자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투자환경 면에서도 2008년 ‘외국인투자제한법’으로 자원개발과 전략적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환경은 다소 악화되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감면(법인세: 24→20%), 세제 간소화, 국제수준의 회계기준 도입 등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사업 환경이 개선되었다. 예금자보호법 등을 통한 은행제도 개선, 투명하고 신속한 관세행정, 지적재산권 보호 등 국제적인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2009년 4분기 이래 세계적 경기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2010년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투자 경색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²⁸⁾ 되는 점도 대 러시아 FDI 유입 전망을 밝게 한다. 러시아 자체의 경기회복도 거시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대 러시아 FDI 투자를 고려하는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러시아가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아-태 지역으로 편입시키려 노력²⁹⁾ 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을 대외경제관계의 유지·확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국의 통상협력 여지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경제구조를 자원·에너지 중심에서 지식·혁신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높은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ICT 산업, 원자력, 무선·전자, 조선업 등이 핵심 발전산업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2010년은 한-러 수교 2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여 양국 정부간 접촉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경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EU, 중국, 터키 등을 외면한 채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향후 러시아 진출 시 이들 기업과의 경쟁이 점점

28) PwC의 제12차 연간 글로벌 CEO 조사(2009) 결과 러시아 주요 기업의 CEO 들은 다른 국가의 CEO에 비해 경제 전망에 긍정적이며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확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9) 러시아는 2012년 APEC 정상회의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할 예정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FDI가 주춤해진 현 상황을 러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투자 지역·산업을 다양화시킨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 내수시장의 성장 가능성이라는 러시아 경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러시아 경제가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하고 루블화의 실질환율 절상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투자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관료제와 사법체계 등을 개선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노력이 의 개선이 아직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³⁰⁾을 고려하여 투자에는 철저한 현지조사와 신중한 사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K**

〈참고문헌〉

1. 장덕준, “푸틴의 사유화 정책과 재산권의 제도화 문제”, *중소연구*, 2007
2. 정여천, 김석환, “현대러시아 정치·경제의 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3. 한국수출입은행, “2009년도 하반기 투자환경위험 평가현황”, *수은해외경제*, 2009. 10
4. _____, “러시아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국별리포트*, 2009. 10
5. _____,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2010. 2
6. A.T.Kearney,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Confidence Index, 2010
7. ECFIN Country Focus, “Foreign Investment in Russia”, 2008
8. EIU, Country Commerce: Russia, 2008~2009
9. ____, Country Profile, 2008
10. IFC, Doing Business 2010, “Russian Federation”, 2009
11.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12.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9~2010, Sep. 2009
13. Yi Feng, Yi Sun and Joshua C. Walt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Russia and Lessons for China”, *The Chinese Economy*, May-June. 2009
14. keri.koreaexim.go.kr(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15. www.cbr.ru(러시아 중앙은행)
16. www.gks.ru(러시아 통계청)
17. invest.gov.ru(러시아 투자청)
18. www.shinkim.com(법무법인 세종)

30) 허가 절차, 임의적인 조사 등 예측 불가능한 전형적인 관료적 부작용이 사업운영에 방해물이 되고 있으며, 지방간 사업 조건에 통일성이 없고, 지방공무원은 허가 및 등록세 부과 및 세무조사시기 결정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